

■ 特許와 獨禁法의 運用 ■

— 美의 處理가 가장 先進的 —

美國에서는 特許侵害訴訟 등에 있어被告가 特許權者인原告를 걸어 獨禁法違反으로 提訴 抗辯하는 事例가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餘他國家에서는稀貴한 정도라는 것이 常特化되어 있다.

獨禁法違反行爲라는 것은 대체로公正自由스러운 경쟁의環境을 파괴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환경파괴의 行爲者에게는 特許權의 主張을 할 資格이 없다는思考方인 것이다.

그러나 日本만 해도 이러한 提訴에 대한 判決은 거의 볼 수 없다. 그理由인즉 辯護士들이 항변을 하지 않는것이 慣例처럼 되어 있어 판결이 내릴 素地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변호사의 이러한 姿勢는 항변을 해도 採擇되지 않으리라는 지레짐작이 아니겠느냐가一般的의 通念이다.

参考로 미국에서는 예로부터公開된 技術知識은 특히권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를 例外하고는 社會의 共有財產이라는 觀念이 뚜렷하다. 特許發明이 獨占되는 것은 特許法에 規定되어 있는 하나 그 根底에는 발명은 無에서 생기는 創造物이므로 발명에 獨占권을 허용하여도 公衆은 아무런 損失이 없다는 사고방식에根據한 점이다.

만약에 공지기술에 특허를 賦與하면 社會의 共有財產으로서의 自由를 잃게 되어 無效審判을 거쳐 最終적으로 특허무효가 되려면 몇해가 걸리게 되므로當事者の被害은 莫大하다. 따라서 공지기술의 獨占권 허여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쓰지 못하게 되므로 기출개발경쟁에 障害가 된다는意思들이다.

■ 工業所有權 풀管理制 登場 ■

— 業種別 團體서, 外國情報도 —

요즘 外國에서는 業種別 關體가 工業所有權의 풀制運用 또는 海外의 關聯特許情報의共同蒐集 등共同特許管理로 成果를 겸우는例가 있다.

특히 日本의 카메라生產業者들의 모임인 光學工業技術研究組合이 組合員들이 갖고 있는 공업소유권을 公開하여 공동 이용하는制度를 들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들은 578件의 特許를 풀로 利用하도록開放하였다는 것이다.

그 뿐아니라 美, 英, 西獨, 프랑스 등의 光學關聯特許情報를 航空便으로 購入, 分類整理하여 조합원의共同管理, 運用하고 있다.

그러나 日本에는 研究組合法이 있어 공동기술개발과 함께 外國特許의 公동구입관리도 施行하고 있다.

풀制는 規約을 만들어 공업소유권의活用을促進하고各社가保有權利를 實施許諾할意思가있으면 그 권리를 조합에登錄하여當

事者間에 協議決定하게 된다. 또한 登錄臺帳에는 권리의 名稱, 權利者姓名 등 必要事項이記載되어 있어 조합원은 언제나去來相談이可能하다.

한편 해외광학기술관련 특허는 美, 英, 西獨, 佛의 4個國資料를公告日, 發明의 名稱, 權利者姓名을 정리하여 備置供給하고 있다.

서어비스 마크의 法的保護氣運

— 日 特許廳, 企業相對 實態調查 —

最近 日本의 產業界는 企業의 서어비스 마크, 特許일자로 商標와同一한 法의 保護를 받으려는 경향이 높아 가고 있다.

先進國들에서는 法의 보호아래 서어비스 마크가 運用되고 있으나 일본은 不正競爭防止法만이 存在하여 서어비스 마크를 에워싼紛爭에는 等閑히 하고 있는 傾向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特許廳도 企業을 對象으로 서어비스 마크의 使用 實態를 앙케트를 통하여 調查하는 法의 保護方案을 檢討하고 있다고 들린다.

또한 서어비스 마크를 기업의營業支柱로서의 役割의 内容을 表示하는 記號로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 NHK, JAL 등이 서어비스業의 마크로 사용되는 것들을 指摘하고 있다.

더우기 商標가 사용되는 商品 즉 自動車, 電氣製品 등에付着되고 있음에 反하여 서어비스 마크는 業으로 하는 서비스에 부착되므로兩者는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